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302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5년 8월 11일
- 회 부 일 : 2025년 8월 14일

2. 제안이유

- 중복·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하여 후생복지 제도 현행화하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조항을 개선하여 후생복지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중복·사문화 조항 삭제(현행 제7조제1호, 제8호)
- 나.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근거 해소(안 제7조제5호)
- 다. 출산지원 조항 개선 및 확대 반영(안 제7조제9호, 제14호)
- 라. 공무원 행정종합배상공제 운영 조항 신설(안 제7조제16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 해당 없음.

(7) 그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5.6.5. ~ 6.25.)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중 중복·사문화된 사업 규정을 삭제하고(현행 제7조제1호 및 제8호),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금 지급 기준 명문화(안 제7조제5호),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공무원의 지원을 첫째 자녀부터 지원 가능하도록 대상 확대(안 제7조제9호), 산전·산후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규정 반영(안 제7조제14호), 공무원 행정종합배상공제 운영 조항 신설(안 제7조제16호)을 통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 〉

조 문	주 요 내 용
제2조(정의)	- 알기 쉬운 법령 기준으로 '정의'를 '뜻'으로 수정
제 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제1호 및 제8호 중복·사문화로 삭제 1. 우수·효행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 8.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 정년·명예퇴직자 격려금 지급 기준을 명문화(제5호) - 출산 지원 대상 확대(2자녀→1자녀)(제9호) - 산전·산후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확대(제14호) -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제16호 신설)
제11조(회의)	- 간사를 담당과장에서 담당사무관으로 수정(제11조제3항)

- 조례는 입법 내용의 통일성과 조화성을 위하여 조례 상호간에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됨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규정하는 조항과 현행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여 입법의 통일성 및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 현행 출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행정종합배상공제 운영을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후생복지 사업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나. 세부내용 검토

1) 후생복지 사업 규정의 정비(제7조)

- 서울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규정에서 중복·사문화된 조항(현행 제7조 제1호 및 제8호)을 정비하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 및 출산 지원 조항 개선 및 확대 반영(안 제7조제5호, 제9호, 제14호), 공무원 행정종합배상공제 운영 조항 신설(안 제7조제16호) 등을 통해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 ----- -----.
1. 우수·효행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	< 삭 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5.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년·명예 퇴직 공무원의 격려금 지급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8.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 삭 제 >
9.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상품권 제공 및 2자녀 이상 출산한 소속공무원의 지원 등	9. ----- ----- 자녀출산 지원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14.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	14.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와 산전·산후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 신 설 >	16.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

① 중복 및 사문화 규정 삭제(현행 제7조제1호 및 8호)

- 현행 제7조제1호 중 “우수·효행 소속공무원 표창”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나, 본 조례에도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고, “문화 유적지 시찰”은 2020년 이후 미운영으로 사문화되었으며, 제7조제8호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2013년 3월부터 정부의 전 계층의 무상보육 지원으로 서울시 지원은 중단되어,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2013년 3월부터 보육료·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에 따라 만 0~5세 전계층 영유아에게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민생 돌보고 활력 살리는 올해 나라살림”, 2013년 1월 18일자 참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제13조에 따른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공무원등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2.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4.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 이는 조례의 중복·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통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있다고 하겠으나, 2013년에 사문화된 규정을 10년이 넘도록 삭제·정비하지 않은 것은 행정국이 소관 조례를 방치하여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법적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저해한 것으로, 향후에는 소관 조례를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② 정년·명예퇴직자 격려금 지급 기준 명문화(안 제7조제5호)

- 안 제7조제5호는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금 지급”으로 선정 기준을 조례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임.

☐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금 선정 기준

-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중 공적심의 통과자

－ 단,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공무원은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제1호~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출처: 행정국, 2025년 8월 14일 제출자료 재인용.

〈 최근 3년간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금 지급 현황 〉

(단위 :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7월)
인 원	698명	573명	550명	302명
1인당 지급액	500,000	500,000	500,000	500,000

※ 출처: 행정국, 2025년 8월 14일 제출자료 재인용.

〈 최근 3년간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현황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7월)
인 원	5명	-	1명	2명

※ 출처: 행정국, 2025년 8월 14일 제출자료 재인용.

- － 정년·명예(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은 정년까지 성실히 근무하며 시정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공무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노고와 공헌에 대한 보상으로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하고, 모범적인 공직 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음.

- 다만, 개정조례안은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적’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어떤 기준으로 공적을 인정받는지 불분명하므로, ‘공적’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공적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③ 출산지원 조항 개선 등(안 제7조제9호 및 제14호)

- 안 제7조제9호 “2자녀 이상 출산한 소속공무원의 지원 등”에서 “자녀출산 지원”으로, 제14호는 “산전·산후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추가 규정하여 출산 지원 분야 후생복지 사업을 개선 및 확대하기 위한 것임.
-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¹⁾은 0.72명으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1.58명의 절반 수준이며,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0.5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바,²⁾ 출산·육아 공무원 지원 확대를 통하여 저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음.
- 이는 둘째 자녀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출산 축하 복지포인트에 대해 첫째 자녀도 지원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개정됨에 따라,³⁾ 첫째 자녀 출산 축하 복지포인트는 2025년부터 지원 중이며, 산전·산후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도

1)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OECD가 회원국의 인구 변화를 비교하는 지표임.

2) 안현찬 외,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의 핵심성과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정책리포트』 제407호, 서울연구원, 2024.9.23., 4면 참조.

3)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24년 7월, 22면 참조.

현재 지원 중으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소속공무원의 출산 지원 사업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자녀출산 지원 확대 내용**

- 대 상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출산 직원
- 지원내용 : 첫째자녀 출산 시 1,000p(10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종 전	개 선
- 둘째 2,000포인트 셋째 이상 3,000포인트	첫째 1,000포인트(신설) 둘째 2,000포인트 셋째 이상 3,000포인트

□ **산전·산후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내용**

- 산전·산후 방문관리 : 전문인력이 임신·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교육, 정서지원 제공(출산당 5회)

시 기	횟수	내 용
산전 (임신 20주 이후)	1회	건강사정, 산전교육 및 분만 준비, 우울검사 및 정서적 지원
산후 (출산 후 10주 이내)	4회	건강사정 및 회복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 관리 교육, 우울검사, 조기 신체회복을 위한 운동지도 등

- 출산준비교육 : 건강한 출산을 위해 전문가 교육 제공(상·하반기)
 - 임신기간 건강관리 및 출산 준비(분만과정, 진통대처법, 호흡법 등)
 - 신생아 돌봄(수유, 목욕, 기저귀 교체, 응급상황 대처법 등)
 - 부부역할관리 및 산후관리(산후우울증, 신체회복 등)
 - 태교 및 체험프로그램 등

※ 출처: 행정국, 2025년 8월 14일 제출자료 재인용.

현 행	개 정
[별표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③ 편성방법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 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별표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③ 편성방법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 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 출산축하 포인트는 기준액 한도 외 별도 편성

④ 행정종합배상공제 운영 조항 신설(안 제7조제16호)

- 안 제7조제16호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 계약 체결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 “행정종합배상공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업무수행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행정종합배상공제 사업개요 〉

- 가입상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상품 가입
- 보장대상 : 전직원 (공무원, 공무원직, 공공안전관, 축탁직 포함, 소방직 별도 운영)
- 보상손해
 - (손해배상금)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 배상금
 -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 (방어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또는 조정을 위해 지급한 비용
- 보상한도 : 사고당 3억원 / 연간 20억원 ※ 형사방어비용 사고당 5천만원
- 지원현황 : '20~'25년 총 40건 신청 중 17건 152,799천원 지원

구 분	총 계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청구건수	40	1	5	3	12	10	9
진행중	3	-	1	-	-	2	-
지급종결	17	1	2	1	1	3	9
면책종결	20	-	2	2	11	5	-
지급보험금(천원)	152,799	500	23,800	3,300	16,000	37,649	72,000

※ 사건 청구 되었음에도 배상책임 불성립, 착오접수 등으로 면책종결 발생

※ 출처: 행정국, 2025년 8월 14일 제출자료 재인용.

〈 최근 3년간 직무관련사건 지정 현황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7월)
지정현황	12건 (민사3, 형사9)	13건 (민사2, 형사11)	12건 (민사2, 형사10)	4건 (형사4)

* 직무관련사건 지정 현황은 직무수행 관련 소송 사무를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지원하고 있음.

※ 출처: 행정국, 2025년 8월 14일 제출자료 재인용(법률지원담당관 협조 제출).

- 서울시는 2019년 9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책임 보험 도입 기본 계획”에 따라⁴⁾ 2020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상품에 가입하였고, 2025년까지 총 40건을 신청하였고, 이 중 17건, 1억 5천 3백만원이 지원되었음.
- 또한,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에서 공무원 책임보험료가 ‘공공운영비’ 세출과목에 명시됨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수행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⁵⁾ 이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종합배상공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하겠음.

2) 통일적 표현 및 약칭 수정 등(안 제2조, 제9조제4항,)

- 안 제2조는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정의규정에서 정의하려는 용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통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⁶⁾ 이에 따라 조문을 정비(“정의는” → “뜻은”)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통일적 표현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4)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4170(2019.9.5.)

5)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20년 7월, 23면 참조

현 행		개 정	
201 일반 운영비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아. 기 타 2) 보험(공제)계약에 의한 해상보험료,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차량보험료, 배상공제료, 기타보험료	201 일반 운영비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아. 기 타 2) 보험(공제)계약에 의한 해상보험료,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차량보험료, 배상공제료, 공무원 책임보험료 , 기타보험료

6)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년 8월, 94면 참조.

- 안 제9조제4항은 제3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원”이라는 약칭으로 규정하고도, 제4항에서 다시 “위원회의 위원”이라고 하고 있어 이를 사용하기로 한 약칭으로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4. (생 략) ④ <u>위원회</u> <u>위원</u>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④ <u>위원</u> ----- -----. ⑤ (현행과 같음)

- 안 제11조제3항은 위원회 간사를 “담당과장”에서 “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담당사무관은 위원회 안전과 관련되는 실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 등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있다고 하겠으나,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성격, 목적, 안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간사의 직급을 “담당사무관”으로 할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회의)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 <u>담당과장</u> 이 맡는다. ④ ~ ⑥ (생 략)	제11조(회의) ① · ② (생 략) ③ ----- ----- <u>담당사무관</u> -----. ④ ~ ⑥ (생 략)

전 문 위 원	정 찬 일	입법조사관	최 문 숙
---------	-------	-------	-------